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1가단20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유재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피고B

변론 종결2021. 7. 8.

판결 선고2021. 7.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9. 11. 21. 접수 제25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8. 5. 3. 3,000,000원을 변제기 2020. 5. 3., 이자율 연 9.7%(연체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제1대출)하고, 2018. 5. 11. 14,800,000원을 변제기 2020. 5. 11., 이자율 13.1%(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제2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C는 위 대여금채무의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12. 29.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14,170,073원(= 제1대출 원금 1,622,921원 + 제1대출 이자 531,786원 + 제2대출 원금 8,501,035원 + 제2대출 이자 3,484,331원)이다.

나. C는 2019. 11. 21.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53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9. 11. 21. 접수 제25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조상과 일가 종친들의 분묘가 대대로 모여진 종산으로서 C의 부친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명의만 C에게 신탁되어 있던 재산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혜주

별지